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36 호

2007년 1월 19일 금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83호(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3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29호(보상계획 열람공고(도립토지구획정리사업)) 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50호(기술용역 입찰공고(정보화기반장비 유지보수 용역)) 1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56호(보상계획 열람공고(남촌동172-5번지 일원도로개설공사) .. 1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1호(연간 유류 구매단가 입찰공고) 1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2호(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1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5호(자동차 폐번호판 매각 단가계약 재입찰 공고) 2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6호(설계용역 입찰공고(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공사 설계용역)) 3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75호(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38

회 람								
--------	--	--	--	--	--	--	--	--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차량관리 규칙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1월 19일

남동구 규칙 제68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차량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2]의 제1호 승용차량 기준정수”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총 계	13대	2대	2대	9대	14대	2대	2대	10대
구 분 청	9대	1대 (구청장 전용)	2대 (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1대)	6대	10대	1대 (구청장 전용)	2대 (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1대)	7대
의회사무 국	2대	1대 (의장전용)		1대	현행과 같음			
보 건 소	1대			1대	현행과 같음			
남동공단 출 장 소	1대			1대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정 필요성 제기
-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129기동 출장반”을 구성하여 시민중심 지원체계 구축

☐ 주요내용

- 구분청 차량의 기준정수를 9대에서 10대로 증가(소형경차1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29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3에 의거 공고 합니다.

2007. 1. 1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2001. 12. 28. 인고 제2001-546호)
3. 보상 시기 : 2007. 2월 중(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보상금 지급 및 문의처
 -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032-453-2954)
5. 보상 대상 : 도림동 370-5, 6번지의 태우빌라
6. 보상 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 제8항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 보상
 - 지장물 즉시 철거 조건으로 지급

- 보상계약 체결이전에 소멸된 지장물은 보상 불가

7. 관 계 인 : 한국주택은행,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국민은행, 동인신용협동조합,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캐피탈주식
회사, 해성산업개발주식회사, 박래열

8.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9. 열람기간 : 2007. 1. 15 ~ 1. 30

10. 열람장소 :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11. 기타사항 : 물건조서 등은 남동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
으신 분은 도시계획과에 문의 또는 이의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 공
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 수
령 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물 건 조 서

			()	()				
1	도림동	370-5	다세대주택 가동 B01	연와조	36.54㎡	지동해	한국주택은행 (여의도동 36-3) 신용보증기금 (마포구 공덕동 254-5)	
			계단(공용)	연와조	3.31㎡			
			대지권					
2	"	"	다세대주택 가동 B02	연와조	36.54㎡	오순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남대문로 2가 9-1)	
			계단(공용)	연와조	3.32㎡			
			대지권					
3	"	"	다세대주택 가동 101	연와조	36.54㎡	김우순	한국주택은행 (여의도동 36-3)	
			계단(공용)	연와조	5.07㎡			
			대지권					
4	"	"	다세대주택 가동 102	연와조	36.54㎡	장성준	한국주택은행 (여의도동 36-3)	
			계단(공용)	연와조	5.07㎡			
			대지권					
5	"	"	다세대주택 가동 201	연와조	36.54㎡	임은주		
			계단(공용)	연와조	5.07㎡			
			대지권					
6	"	"	다세대주택 가동 202	연와조	36.54㎡	이명애		
			계단(공용)	연와조	5.07㎡			
			대지권					
7	"	"	다세대주택 가동 301	연와조	36.54㎡	장경남	한국주택은행 (여의도동 36-3)	
			계단(공용)	연와조	5.07㎡			
			대지권					

물 건 조 서

			()	()				
8	도림동	370-5	다세대주택 가동 302	연와조	36.54m ²	박문국	한국주택은행 (여의도동 36-3)	
			계단(공용)	연와조	5.07m ²			
			대지권					
9	"	370-6	다세대주택 나동 B01	연와조	36.24m ²	구환길	한국주택은행 (여의도동 36-3)	
			계단(공용)	연와조	5.07m ²			
			대지권					
10	"	"	다세대주택 나동 B02	연와조	39.5m ²	이윤태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 남대문로 2가 9-1)	
			계단(공용)	연와조	5.07m ²			
			대지권					
11	"	"	다세대주택 나동 101	연와조	33.84m ²	고옥빈		
			계단(공용)	연와조	5.07m ²			
			대지권					
12	"	"	다세대주택 나동 102	연와조	37.4m ²	김상유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 남대문로 2가 9-1)	
			계단(공용)	연와조	5.07m ²			
			대지권					
13	"	"	다세대주택 나동 201	연와조	33.84m ²	이전호		
			계단(공용)	연와조	5.07m ²			
			대지권					
14	"	"	다세대주택 나동 202	연와조	37.4m ²	강호환	한국주택은행 (여의도동 36-3)	
			계단(공용)	연와조	5.07m ²			
			대지권					

물 건 조 서

			()	()				
15	도림동	"	다세대주택 나동 301	연와조	30.48㎡	이용우	한국주택은행 (여의도동 36-3)	
			계단(공용)	연와조	5.07㎡			
			대지권					
16	"	"	다세대주택 나동 302	연와조	35.87㎡	지경옥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 남대문로 2가 9-1)	
			계단(공용)	연와조	5.07㎡			
			대지권					
17	"	"	다세대주택 다동 B01	연와조	44.85㎡	이영자	동인신용협동조합 (인천 주안동 1560-1)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 (여의도동 36-3) 한국주택은행 (여의도동 36-3)	
			계단(공용)	연와조	10.14㎡			
			대지권					
18	"	"	다세대주택 다동 101	연와조	44.85㎡	정형열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을지로1가 87) 한국주택은행 (여의도동 36-3) 해성산업개발주식회사 (광주 서구 쌍촌동 96-6)	
			계단(공용)	연와조	10.14㎡			
			대지권					
19	"	"	다세대주택 다동 201	연와조	44.85㎡	정이너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여의도동 15-21) 한국주택은행 (여의도동 36-3) 박래열 (인천 구월동1237-4)	
			계단(공용)	연와조	10.14㎡			
			대지권					
20	"	"	다세대주택 다동 301	연와조	41.25㎡	조한일		
			계단(공용)	연와조	10.14㎡			
			대지권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50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정보화기반장비 유지보수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07. 12.31
- 대상기기 : “별첨” 참조
- 설계금액 : ₩88,754,150원(추정가 80,685,590원, 부가세 8,068,560원)
 ☞ 설계금액은 연간금액을 반영하였으며 계약시 낙찰금액을 조정하여 계약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년 01월 16일(화요일) 09:00~01월 25일(목) 13: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7년 01월 25일(목요일) 14: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컴퓨터관련서비스업)에 의거 신고를 필한 업체로
- 시스템통합(SI) 자격이 있는 업체로서
 - 1> 대상장비 각 원제조사(Cisco[백본], FutureSystems[VPN], Nortel[L4], 어울림[PMS])의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1부(총4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 2> 백본스위치(Cisco) 제조사의 공인인증 자격증 CCNP(Cisco Certified Network Professional) 보유직원이 2인 이상,
 - 3> NORTEL 제조사의 공인인증자격증 NCSS(Nortel Networks Certified Support Specialist) 보유직원이 1인 이상 이어야 하고,
 - 4> 입찰등록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 보안장비

(VPN)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 자료제출 : 실적증명 및 기술지원 약속서는 개찰일시 1시간 전까지 우리구 경리팀으로(팩스가능)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증 보유 현황은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4호, 2005. 12. 3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정보통신공사업 적용(2005년)
 - 부채비율 : 164.93%, - 유동비율 : 123.04%입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88,754,150)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기획감사실 정보관리팀(032-453-2125)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01월 1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56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남촌동172-5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미보상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7. 1.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명칭 : 남촌동172-5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규모 : L=367M, B=10M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172-5번지 부근
5. 보상시기 : 2007. 1월
6.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건설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남촌동185-8외2필지
 - 지 장 물 : 해당없음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07. 1. 16 - 2007. 1. 30(15일간)

11. 열람장소 : 남동구청 건설과

12. 기타사항

- ① 토지조서등은 남동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고, 미 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61호

연간 유류 구매 단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연간 유류구매 단가 입찰 공고

나. 구매내역

	가()			
무연휘발유	1,434	리터	10,000	- 예상 소요량은 추정량이며 증감될 수 있음 - 본청, 보건소, 의회 등을 포함한 예상 소 요량이며, 동사무소 등 남동구청 산하 기 관이 이용시도 같은 가격에 공급해야함
저유황경유	1,188	리터	121,000	
실내 등유	905	리터	8,000	
합 계	3,527		139,000	

다. 기초금액 : ₩3,527원 - (한국석유공사의 주간 인천지역주유소가격, 2007.1.08 ~ 1.12)

라. 계약기간 : 계약일 부터 2007.12.31까지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 1. 18(목) 14:00 ~ 2007. 1. 29(월) 14: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07. 1. 29(월) 15:00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 PC

아. 유류공급 단가는 한국석유공사의 주간 국내유가동향의 인천지역 주유소 판매가격에 입찰시 투찰한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한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등록한 업체

나. 우리구 청사 중심으로 반경 1Km이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구의 45인 승 대형버스 출입이 가능 하여야 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3. 입찰방식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가)이하 최저가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동일 가격의 경우에는 추첨결정)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3,527원) $\pm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대금 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나. 개찰 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행정제재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타입찰조서등, 관련법규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바.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경리팀 담당 송한수(☎ 032-453-22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6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취지**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2006. 3. 31일 제정·공포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임.

3. **주요개정내용** : “본문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2007년 2월 7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453-585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2006. 3. 31일 제정·공포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

-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
-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4조 내지 제5조)
- 운영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6조 내지 제7조)
- 운영위원회의 회의(안 제8조)
-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안 제12조 내지 제13조)
- 보조금의 신청 및 보조금관리(안 제14조 내지 제15조)
- 회계결산(안 제17조)
- 직원의 정원과 임면 및 자격조건(안 제18조 내지 제20조)
- 공인(안 제24조)

☐ 본 문 : "별첨"

☐ 참고사항

-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준용규정) 남동구노인인력관리센터(이하“노인인력관리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노인일자리사업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 3 조(운영위원회 설치) ①노인인력관리센터의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남동구노인인력관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소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수렴 하여야 한다.

제 4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사항
3.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

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 중 당연직은 남동구 주민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구의회의원·유관기관 단체장·기타노인복지 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노인인력관리센터 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 조(위원의 해촉) 소장은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 8 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위원회의 의사록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재무 및 회계

제11조(재원)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남동구 보조금

2. 기타수익금

제12조(회계관리) ①노인인력관리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②노인인력관리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청장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인력관리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④노인인력관리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재산관리) ①노인인력관리센터의 재산은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②물품 및 장비관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보조금의 신청) ①구청장은 노인인력관리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다음연도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및 예산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 관리) ①소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타 재원의 관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회계서류의 보관)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수입·지출결의서 등 회계기록에 대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3. 운영위원회 의사록(사본)1부.
4. 사업실적보고서 1부.

제 4 장 보수 및 인사

제18조(직원의 정원)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직원은 소장, 운영팀장, 운영요원 2명의 4인으로 한다. 단, 이를 변경 하고 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직원의 임면) ①노인인력관리센터의 직원은 구청장이 임용하며 그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할 수 있다

②노인인력관리센터 소장의 정년은 65세로하고 기타 직원은 60세로 한다.

③구청장은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직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자격요건) 노인인력관리센터 직원은 [별표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1조(조직체계 및 임무)①노인인력관리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2] 와 같다.

②소장은 조례 제3조·제6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보수) ①노인인력관리센터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②노인인력관리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또는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기준”을 준용하고, 제수당의 지급기준 및 범위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장 복무 및 공인관리

제23조(복무) 노인인력관리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공인) ①노인인력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소장 직인
 2.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위원장 직인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 ②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3]과 같다.
- ③공인의 관리는 소장이 하며 기타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공인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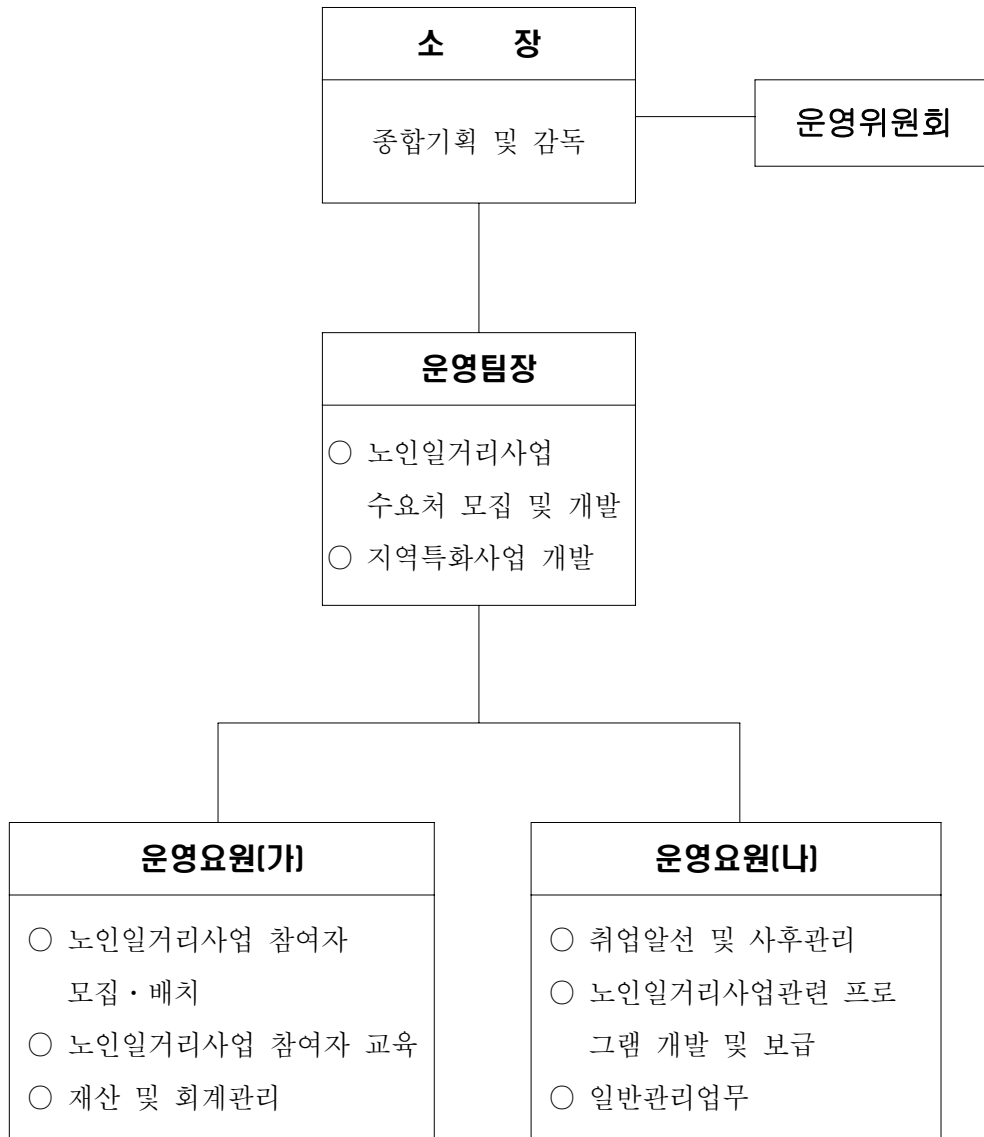
[별표1]

노인인력관리센터 직원의 자격기준(규칙 제20조)

소 장	1.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4. 기업 경영 또는 인력관리업무(팀장급이상) 종사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운영팀장	1.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4. 기업 임원 또는 인력관리업무 종사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운영요원	1.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관련자격증 소지자 3. 공무원 또는 인력관리업무 종사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별표 2]

노인인력관리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규칙 제21조)



[별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소장인

3cm	
인천광역시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소장 인	3cm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인력관리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인

3cm	
인천광역시남동 구노인인력관리 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3cm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65호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 단가계약 재입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 단가계약 재입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징수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 단가계약

나. 매각대상물건

		()		
자동차 폐번호판	알루미늄	4,300kg정도	www.onbid.co.kr '07.1.19(금) ~ '07.1.24(수)	'07.1.25(목) 15:00 (남동구차량등록민원실 입찰집행관 PC)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07. 12. 31

라. 예정가격 : kg당 1,320원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92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사업소(영업소)를 두고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4.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 참가는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라.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인터넷 입찰방법 및 온비드 이용안내(동영상)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 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

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등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급번호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유효한 입찰로서 최저입찰가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공개된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임)

다.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지정기일내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자동해약과 동시에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당일 입출금이 가능한 수표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보며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합니다.

다. 매각대금은 매월 폐번호판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의 계약시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2) 개별서류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 개인-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됨으로 입찰참가자는 자동차폐번호판매각 시방서, 입찰관련법령, 전자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조건,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등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 및 입찰결과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1588-5321)

○ 기타 사항은 남동구차량등록민원실 (☎453-29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물품은 자동차 신규, 전입, 변경, 말소등록에 의하여 발생된 폐번호판의 적절한 매각 시가를 산정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시 적용한다.

2. 매각중량 : 2007. 1. 2 ~ 12. 31까지 발생량 (4,300kg 정도)

3. 규 격

가. 품 명 : 자동차 폐번호판

나. 재 질 : 알루미늄

4. 매각 및 검수

가. 발생된 폐번호판은 절단하여 보관후 일정한 시기별로 매각

나. 폐번호판의 인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용해하여야 하며 타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인도 받은 폐번호판은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계근하여야 한다.

(단, 임시나무번호판은 전량수거 후 폐기처리 한다.)

5. 계약기간

계약체결 시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단 2008년 계약체결시 까지 계약사항을 연장 할 수 있다.)

6. 권리양도

계약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7. 계약해지

가. 지정기일내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나. 제5항의 나와 다호에 2회 위반시

다. 법률, 규칙, 조례 등 개정시

라. 기타 우리사업소에서 계약해지의 필요성이 있을시

8. 매각대금 납부

매월 폐번호판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준수

계약자는 인도받은 폐번호판의 외부 유출로 인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66호

설계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공사 설계용역
- 용역위치 : 남동구 구월동 1114-12번지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용역개요 : 증축 연면적 740.00㎡(223.84평) 지상 4층
- 설계금액 : ₩42,900,000원(추정가액 39,000,000원 부가가치세 3,900,000원)
- 기초금액 : ₩42,900,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년 01월 19일(금요일) 09:00~01월 29일(월요일) 15: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7년 01월 29일(월요일) 16: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 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은 금액인 (₩42,900,000)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7호) 및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8호)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건축과 공공시설팀(032-453-281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남동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01월 1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7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인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본문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2007년 2월 5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453-589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 2007년 1월 일

제 출 자 : 남동구청장

☐ 개정사유

-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인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육경비보조조례의 목적 수정(안 제1조)
-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의 제한 수정 및 신설(안 제2조)
- 보조사업의 범위 수정 및 신설(안 제3조)
-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수정 및 확대(안 제5조)
-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보고 수정(안 제14조)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 참고사항

-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 제27조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2항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인천광역시 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 1 조(목적)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유아교육법」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제1항의 “지치구 세수입과”를 “지방세와”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보조금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는 1억원 범위 내
2. 사립유치원은 1천만원 범위 내

③ 보조금의 예산은 학교와 유치원을 분리하여 편성한다.

제 3 조 본문중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을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유치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로 하고, 제6호,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연수경비 및 교재·교구비
7.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환경 개선비·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 5 조제1항중 “7인”을 “9인”으로 하고 “1/2”를 “1/3”으로 하고, 제1항제4호중

“전문가”를 “학교운영협의회 위원 또는 전문가”로 한다.

제13조제1항의 “위원회는”을 “구청장의”로하고, “학교가”를 “학교 및 유치원이”로 하며, “위원회의”를 “구청장의”로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 및 유치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별 경리 보고서
 3. 보조사업 및 보조금의 사용을 종료 한 때에는 사업종료 또는 실적 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에관한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u>에 의하여 <u>인천광역시남동구비를 재원으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 2 조(보조기준액의 제한)① 구청장은 <u>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u> <u>②보조금 지원은 1개 학교에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③<신설> 제 3 조(보조사업의 범위) <u>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u> 1.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u>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유아교육법」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 2 조(보조기준액의 제한)① ----- 지방세와 -----. <u>② 보조금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u> 1. <u>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는 1억원 범위내</u> 2. <u>사립유치원은 1천만원 범위내</u> <u>③ 보조금 예산은 학교와 유치원을 분리하여 편성한다.</u> 제 3 조(보조사업의 범위) <u>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유치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u> 1~2. (현행과 같음)
---	---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신설> 7. <신설> 8. <신설> 제 5 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u>7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구공무원인 위원의수는 전체위원의 <u>1/2</u>이하 이어야 한다. 1. 구 공무원 2. 남동구의회 의원 3인 3. 관할 교육구청에서 추천하는 교육자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u>전문가</u> ②,③ (생략)	3~5. (현행과 같음) 6. <u>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연수경비 및 교재·교구비</u> 7. <u>유치원 종일반의 교육환경개선비·인건비 및 교재·교구비</u> 8. <u>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u> 제 5 조(구성) ①----- ----- <u>9인</u> ----- ----- ----- ----- <u>1/3</u> -----. 1~3. (현행과 같음) 4. ----- ----- <u>학교운영협의회 위원 또는 전문가</u>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①위원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② (생략) 제14조(보조금의 정산)보조금을 집행한 기관은 정산내역을 60일 이내에 구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과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구청장은 -----학교 및 유치원이 -----. ----. 구청장의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조금의 관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 및 유치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별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 및 보조금의 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 또는 실적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에관한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

◆ 사 업 명 : 남촌동 172-5번지 도로개설공사

				(㎡)			
	동 명	지 번					
8	남촌동	185-8	도	837	경기도 안성군 263-3	김상기	동대문세무서, 서울마포구연남동 487-123
12	남촌동	177-2	도	192	수정 522	송현택	
14	남촌동	176-2	도	231	경성부 수창동 31-1	이상의	
		합 계		1,260			